

한방 폐해 중단을 위한 의료일원화 민간행동요령

유 용 상

미래아동병원 원장
전)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yys4787@naver.com



〈편집자 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한방은 의과학적 검증을 거부하고, 부작용 조사와 유의미한 통계생성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한민국이 왜 탈한방 정책 기조로 돌아서야 하는가 그 당위성과 구체적으로 한방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계적인 밑그림 등을 그려보고자 한다.

르네상스이후 인류는 과학혁명의 진보를 시작하였다. 과학은 기존의 낡은 지식과 기술에 대한 반역을 의미한다. 과학자는 감성이 아닌 이성을 갖춘 반역자였으며 그 반역은 인류의 삶에 커다란 발전과 인권의 신장을 가져왔다. 과학뿐 아니라 철학분야도 20세기에 들어서 두 차례의 거센 지적 동요를 거쳤다.¹⁾ 경험주의적 정신과 논리적 도구로 무장한 분석철학은 형이상학적 전통의 철학적 이론들을 지탱해왔던 의미론적 근거를 무너뜨렸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체론적 비판을 통해 철학적 이론화 자체의 근거를 무너뜨리고 철학의 또 다른 변형을 요구하고 있다. 찬란한 과학적 반역의 시대와 철학적 변형의 사상이 우리 한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적응되고 있는지는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과학 분야의 과학적 반역과 성찰이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한 메타적 시각이 절실한 순간이 아닐까한다.

한국의 의료 이원화 제도는 시대착오적이고 미개한 제도이다. 과학적, 철학적, 시대적 성찰이 지연된 시대 상황에서 남겨진 전근대적 제도이며 선진 국가라면 당연히 사라져야 할 제도인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과학에 정치나 이념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좌파는 한의학을 감싸고 우파는 현대의학을 지지하는 등 어리석은 이념이 과학의 분야에 관여하는 일도 허무맹랑한 일이다. 국민의 목숨을 허위 이론과 술기로 기만하는 한의학의 문제를 의료일원화를 통하여 극복해 나가고자하는 의견은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의료일원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방안은 이미 의정합의체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한의학퇴출을 목표로 하는 의료일원화 한방 대책은 끝이 없는 문화투쟁으로서 과학·철학계와 철학학회, 역사학회 등 지적 성찰에 관여하는 전 영역으로 담론을 광범위하게 확장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의료계 내의 지적 무장은 필수이다. 과학이론과 이성으로 막무가내를 이겨 낼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지만 한의학을 폐지하는 일은 정말 굳건한 의지로 지속해야 할 의사협회의 숭고한 의무가 아닐까한다.

한국의 유용상, 중국의 장궁요, 뉴욕의 왕징박사가 합의한 한의학 퇴출을 위한 민간행동강령을 기고하는 바이다.

1) 철학적사유의 갈래. 노양진 저.

《한방 폐해 중단을 위한 의료일원화 민간행동요령》

장궁야오, 유용상, 왕징

1.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인식을 확고히 한다.

- 1) 한의학은 “의학(醫學)”이라는 권위적 전문용어를 누릴만한 자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한의학은 몇몇 개인에 의해 자신의 시대적 인식방식과 인식수준을 근거로 제창해낸 것으로, 유구한 전통이라는 의로운 이름(名義) 또한 사칭할 자격이 없다. 세계 각 지역의 고대의학이 현대 의학의 선조가 되지 않는 것처럼, 중국 고대의 모든 전래 ‘구의학’ 역시 우리의학의 선조나 전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한의학이 ‘전통’이라는 거짓 명예를 품에 끌어안은 채, 죽어라고 전통의 이름을 붙들고 놓지 않음을 비판하는데 우리들은 조상의 이름을 빌려 사기행각을 하고 있는 이들의 추악한 행동들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 2) 과학적 태도와 방법으로 의학에 있어서의 생명과 질병을 다루고 발전시켜야 함은 우리들이 반드시 고수해야 할 원칙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전통문화”나 이념을 이유로 과학을 억누르려는 문화 권력을 철저히 비판해야 할 것이다.
- 3)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생명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반드시 의료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권적 규범이 되어야 한다.
- 4) 한의학은 한국과 중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널리 행해져 왔다. 우리가 과학교육을 받아들인 시간은 비교적 늦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육과 정치적 역정이 달려온 굴곡진 길은, 한국과 중국이 한의·한약에 작별을 고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상치도 못하는 이념적 어려움이 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작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지혜와 용기 및 굳은 의지와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다.
- 5)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는 일은 비록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당연히 충분한 승리의 자신감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민의 과학적 의식이 조금씩이나마 진전되고 있고 폐쇄적 민족주의를 성찰하는 움직임은 한의학과의 작별을 고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2. 의료일원화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작업

- 1) 과학적인 태도와 객관적인 사실 및 이성적인 정신으로 일반인의 지식을 개화시키되, 말다툼하지 않고 욕하지 않으며,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우리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중대한 이론적 문제를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 ① 왜 우리들은 반드시 한의학과 작별해야하는 것인가? 한의학에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행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 ② 어떻게 한의학의 유효성(有效性)을 증명할 것인가? 한의·한약에 존재하는 안정성에 관한 드러나지 않은 폐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③ 왜 생명과 질병을 다루는 의학 영역에서 과학정신을 반드시 고수해야 하는 것일까?
 - ④ 한의학의 사유방식과 행위습관은 한국과 중국의 의료와 의학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으로 존재하는가? 한의학적 사유방법과 행위습관이 일반 국민의 사고에 미치는 심각한 위해(危害)는 어떠한 것인가?
 - ⑤ 어떻게 한의학의 “국제화”를 다룰 것인가?
 - ⑥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전제는 성취 가능한 것인가, 오류인가?
 - ⑦ 한의·한약에 현대의약이 교묘히 섞이면서 어떤 폐단과 위험이 존재하는가? 국제사회가 “한의학에 현대의학을 섞는 것”을 놓고 공격을 하는데,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 ⑧ 한의학이 현대과학 전문 용어를 표방한(예컨대, “총체적 의학”과 “체계적인 의학”)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어째서 한의학은 “총체적 의학(整體醫學)”과 “체계적인 의학(系統醫學)”에 속하지 않는가?
- 2) 이상의 이론 작업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여론을 형성하여, 정부에 압력을 가해 철저하게 한의학을 처리하도록 하고, 한의학이 “고의로” 사람을 속일 수 없게 할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사기를 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 3) 사회적으로 한의한약을 이용하여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와 결과를 폭로한다.
- 4) 지속적으로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에 관한 논문집을 편찬하고 출판한다.

3. 의료일원화를 위해 도달해야 하는 목적

- 1) 한의학을 국가의료 시스템에서 제거하는 것은, 한의학을 명실상부하게 “민간기술”로 새로이 돌려보내는 것으로 현재 국가의 제도로 기 양산된 한의사들의 생존권을 고려한 것이다.
- 2) “환자가 자발적인 의지로 선택하고”, “해롭지 않으며”,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전제로 한의·한약의 “대체의학”적 존재를 한시적으로 허가한다.
- 3) 모든 한의학 연구기구를 폐기하고, 모든 이중맹검검사를 받지 않은 한의·한약의 연구는 정지하여, 이로써 국가의료자원과 과학연구자원의 낭비를 막는다.
- 4) 모든 한의학 대학은 폐쇄하고 희망자격자에 한하여 의과대학으로 한시적 편입을 추진하며, 또한 강의에 있어서는 과학사상, 과학방법, 과학정신, 과학지식의 숭고한 지위를 명확하게 확립하고,

순수한 강의 내용을 추구하며, 모든 개념 명칭에 대한 불명확, 논리적 혼란, 경험기초가 부족한 “한의학의 이론” 강의는 철저히 폐기한다.

- 5) 한의·한약과 관련된 안전한 연구와 감독 시스템을 되도록 빨리 작동시키고, 위급 환자에 대하여 한약과 사이비의학에 대한 피해 및 안전 정보를 한층 더 강화한다.
- 6) “의사”와 “한의사”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의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사 직책이다. 그러나 한의사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선택”과 “무위해” 및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근거로 자율적으로 제한적 의료행위를 한다. 국가는 책임지고 감독하지만, 정부가 의사에게 부여하는 일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예컨대, 한의사는 진단서에 서명할 수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체 검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료사고 검증과 법의학 검증에 참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의학 혹은 약학의 과학성과 검증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침습적 치료를 실시할 수 없으며, 군의관으로 복무할 수 없다.
- 7) 현재 존재하는 한방병원은 전반적으로 현대의학 병원으로 전환을 추진하여야 한다.
- 8) 국가는 자발적인 의지로 한의사에게 병을 치료받는 환자에게는 의료보험 지불을 하지 않는다. 민간보험회사가 이러한 류의 보험지불을 맡고자 한다면, 정부는 당연히 이를 허가하지만 이를 위해 재정적인 보조 의무를 담당하지는 않는다.
- 9) 한의계의 젊은 인재들은 과학적 양심으로 의료 일원화운동에 동참하고 국가에 의해 허가된 한의학 교육으로 파행된 본인들의 정체성 혼란에 대하여 국가의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